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4.22.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의 처리(영 제9조의3제6항)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운영에 사

용하도록 함.

다.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의 보고(영 제9조의3제7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광역교통계정 관리대상 사업(부칙)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서 ‘27.1.1일 이후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15까지를 각각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6까지로 하고,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운영한다.

③ 광역교통계정의 회계연도는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④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의 운용실적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광역교통계정 대상사업의 변경이력, 집행실적 등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계정의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3(광역교통계정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u> <u>② 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운영한다.</u> <u>③ 광역교통계정의 회계연도는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연도와 같다.</u> <u>④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⑥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u>

<u>제9조의3</u> ~ <u>제9조의15</u> (생략)	<u>른 개발사업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u> <u>⑦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의 운용실적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⑧ 광역교통계정 대상사업의 변경이력, 집행실적 등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u> <u>제9조의4</u> ~ <u>제9조의16</u> (현행 제9조의3부터 제9조의15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5049